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재산권에 관한 연구

박상수*

목 차

- I. 서론
- II. 재산권의 몇 가지 의미와 법
- III. 자본주의 재산권이론
- IV. 공산주의 재산권이론
- V. 재산권제도와 이데올로기
- VI. 결론

I. 서론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사유재산제도이다. 재산권에 대한 규정 없이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재산권의 행사에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현대에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이런 이념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며, 그런 무제한적인 재산권의 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재산의 공유화를 주장하면서 특정한 재산이 특정한 개인에게 사유되는 것에 반대한다. 공산주의는 특정한 개인이 재산을 정당하게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재산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무소유적 재산권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산권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차원에서 각 제도의 재산권의 이념적 특성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추상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재산권제도의 골격을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살펴봄으로써 각 체제가 추구하는 이상도 추적할 것이다.

Ⅱ에서는 재산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법과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분석하고, Ⅲ에서는 자본주의 재산권이론을 분석하는데, 우선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의 의미와 그 한계를 검토한 연후에 사유재산제도의 변천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Ⅳ에서는 공산주의 재산권이론을 검토하는데, 우선 사회주의에서의 재산권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적 공산주의적 재산권이론을 검토한다. Ⅴ에서는 재산권제도가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Ⅱ. 재산권의 몇 가지 의미와 법

1) 재산권의 의미

재산권(property rights)은 희소한 재화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며 그리고 그런 희소한 재화의 사용에 관련되는 개인들간의 관계이다. 재산권은 개인들이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즉 재산권은 사람과 사물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희소한 재화와 관련하여 개인들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재산권제도는 경제적인 재화만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재화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 투표권 등도 넓은 의미에서 재산권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유재는 당연히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며 자유재가 경제재로 전환되면 당연히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기는 자유재이지만 오염되면서 소위 환경권이 재산권의 하나로 등장하기도 한다.(Pejovich, S., 1997, p.3을 참조하시오)

2) 소유권의 특징

소유권(right of ownership)은 재산권 중에서 물적 자원의 소유와 관련된 재산권이고, 보다 협의적인 의미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세 가지 요소, 즉 소유의 배타성, 소유의 양도성 및 소유의 헌법적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소유의 배타성은 소유자가 한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그 선택의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유권은 소유자로 하여금 가장 가치가 높은 용도로 그 재화를 사용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포즈너(Posner, R. A., 1992, p.30)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예컨대 어떤 목장이 공유라고 한다면 누구나 방목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목초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안 할 것이다. 그 결과 목장에 소가 너무 많이 방목될 것이며 목장의 생산성도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때 목장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 소유되고 방목하는 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시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목장에 대해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 그 결과 목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소유권의 양도성은 소유자가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특정한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정보의 세계에서 소유의 양도성은 덜 낙관적인 소유자로부터 보다 낙관적인 소유자에게로 재화가 양도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시 한번 포즈너(Posner, R. A., 1992, pp.30-1)의 설명을 들어보자. 현재 목장이 농부 갑에 의해 소유되고 매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예상되는 소득을 현재의 이자율로 현재가치화한다면 그 현재가치가 1천만 원이 된다고 하자. 그리고 만약 다른 농부 을이 이 목장을 구입하여 운영한다면 그 현재가치가 1천 5백만 원이 된다고 하자. 두 사람은 1천만 원과 1천 5백만 원 사이의 가격에서 그 목장을 사고판다면 두 사람 모두가 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장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도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소유의 헌법적 보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제적 부를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장기적인 결과를 갖는 투자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만약 재산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즉 정권이 바뀌고 권력자가 바뀔 때 따라 재산권이 몰수된다면, 일반 시민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장기적인 수익을 낳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게 된다.

3) 소유권의 유형

이런 소유권은 오늘날 세 가지 유형, 즉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 공적 소유(public ownership) 및 공동체 소유(communal ownership)로 나눌 수 있다. 사적 소유는 개인이 주된 소유자로 되는 경우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물, 예컨대 토지, 자본재, 소비재 모두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그 소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특정한 재화나 기업을 소유할 수 있으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다면 그 토지는 두 사람 이상이 그 사용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 소유도 개인이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사적 소유의 기본 취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공적 소유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나 건물 혹은 공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보편적인 소유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도 허용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시민들에게 양도하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 소유는 잘 정의된 일련의 집단이 양도 불가능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 자산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리와 수익을 배분할 권리를 갖고 있다. 토지의 공동체 소유는 옛날 씨족사회에서 흔한 현상이었지만, 현대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관리기업이 공동체 소유 형태를 취하고 있다.(Pejovich, S., 1997, pp.3-4를 참조하시오)

4) 재산권과 법

법의 심층팔구는 소유와 관련이 될 정도로 소유는 일상생활이나 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다. 재산권제도는 “나의 것”이 어느 것이고 “당신 것”이 어느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장치이며, 이런 제도는 소유와 사용에 관한 권리들을 상세히 규정짓는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우리가 사물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물들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말해 주기도 한다.

또한 법과 관련된 재산권은 어떤 사물(구체적인 대상물이나 추상적인 지식 등)에 대한 여러 사람간의 분쟁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의 임무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것과 당신 것에 관해서 법이 갖는 핵심은 소유에 관련된 분쟁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분쟁과 관련된 소유의 문제가 제거된다면 우리는 이제 소유권 혹은 재산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회가 재산권에 관해서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비록 동일한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인접

해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 내에는,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어떤 방식들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내할 만한 정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쟁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그들에게 만족스러워야 한다.

Ⅲ. 자본주의 재산권이론

재산권 혹은 소유권제도는 동일한 자본주의체제에서도 국가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전체 구조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제도를 추상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사물로부터 복합적인 사물로 분석을 확대할 것이다.(이하의 내용은 Dyke, C.(1981), pp.76-83을 많이 참조하였음)

1) 소유권의 사례

소유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책의 경우부터 가장 복잡한 회사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관점들을 검토해 보자. 이런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이 아님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우선 가장 단순한 책의 경우를 살펴보자. 책에 대한 소유권은 두 가지 관점을 갖는다. 첫째 당신은 그 책을 어떻게 얻었는가? 둘째 당신은 그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선 책을 획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즉 그 책이 누구에 의해서 당신에게 주어질 수 있거나, 혹은 당신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책을 획득하였다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책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강탈, 절도 등)으로 그 책을 획득하였다면 그 책은 합법적으로 당신의 책이 아니다. 이런 소유권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당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그 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당신은 그 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읽거나, 여백에 낙서하거나, 물건 받치는 데 쓰거나, 불을 붙이는 데 쓰거나, 팔아버리거나, 주어버리거나, 그냥 버리거나, 빌려주거나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책과 관련하여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들이며, 다른 권리들과 더불어 이런 권리들은 책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정의한다.

그렇지만 판권(copyright)에 관한 법률은 책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그 법은 임의로 그 책을 대량으로 복사해서 파는 것, 허락 없이 그 책을 재인쇄하는 것 등등을 금지한다. 따라서 책의 소유권은 정당하지만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엄연한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이런 금지는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권리들과 금지들을 고려할 때에, 책의 소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즉 책을 정당하게 획득하였을 때 책은 분명히 당신의 소유인 것은 확실하지만,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는 약간의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소유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비싼 자동차를 생각해 보자. 만약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신은 그것에 당신의 이름을 부여할 자격을 갖게 된다. 당신은 분명히 책에 대해선 당신의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와 관련된 권리와 금지들이 책과 관련된 권리와 금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다르기도 하다.

예컨대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선(폐기, 매각 등) 당신이 해야 하는 것에 관한 엄격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당신은 자동차를 아무 곳이나 버리게끔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자동차의 사용은 적절한 면허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책에 대해선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책을 빌려줄 경우 그 책이 빌려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자동차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소유주가 변상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저런 검토를 고려한다면,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부가되는 권리와 금지는 책에 부여되는 권리와 금지보다는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더욱 복잡한 건물과 실물 부동산의 소유권을 검토해 보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권리에 대한 자격(titles)이 포함되지만, 권리와 금지의 체계는 더욱 더 복잡하게 얽힌다.

당신의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즉 도시를 구획하는 법, 토지 수용권에 관한 법, 광물과 물의 권리, 영공(領空)의 권리 등등을 포함하는 판도라의 상자. 부동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보다는 더욱 강화된 제약과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만약 한 건물이 역사적인 건물로 지정이 된다면, 더욱 더 많은 규칙이 적용된다. 역사적 건물의 철거는 거의 불가능하며, 그리고 수선이나 구조의 변경은 반

드시 문화재 관리부서의 허락을 얻은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 보자. 우리는 법인, 조합, 주식회사, 이사회제도 등에 관한 온갖 종류의 법률에 접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한 법의 상당 부분을 적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사의 소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회사에 관한 소유권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간단한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단히 복잡한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 소유권에 관한 모든 관점들을 적어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개략적이면서 필요한 부분만 알고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한다.

우리는 이제 소유권의 개념에 기본적인 핵심, 즉 모든 종류의 소유권에 공통적이라고 알려진 소유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할 것이다. 이런 특징, 즉 기본적인 핵심은 재산권에 대한 우리 이해의 기초로 이용될 것이다.

우선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에 어떻게 도달하였는가에 관한 규칙은 핵심의 일부로 이용된다. 우리는 구매와 절도, 그리고 증여와 임대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재산 개념의 기본을 파악하게 된다. 추가로 개인 혹은 자유로이 결합된 개인들이 사물의 주요 소유자라는 것도 재산권 개념의 기초인 것 같다.

2) 순수한 자본주의와 규제 및 제한

주요 소유자가 개인인 사유재산제도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제도에서는 물건의 사용과 처분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부여되고 있다.

우선 "순수한 사유재산제도"를 상상해 보자. 그런 제도에서는, 일단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어떤 제한도 없고, 어떤 규제도 없으며, 어떤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건물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팔 수도 있고, 주어버릴 수도 있으며, 부서버릴 수도 있고, 공장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당신이 소유한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모두 유사하다.

비록 이상적인 사유재산제도라고 하여도, “순수한 사유재산제도”는 즉각 수정된다.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규제와 제약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열렬한 “순수주의자들”은 권리에 대한 규제, 제약 혹은 변화가 사유재산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이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과 처분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제도를 사유재산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

현재의 제도를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소유자가 개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들이 가진 것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는 것이다. 소위 “순수한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적인 틀로 갖추면서, 여러 가지 수정을 가미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제도는 사유재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 규제 혹은 제약에 대한 훌륭한 이유이며, 그리고 누가 합법적으로 규제 혹은 제약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는 순수한 사유재산제도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현재의 제도가 되었는지를 과거의 역사로부터 찾아보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양한 조세가 성립되는 방식, 회사 소유권의 규칙이 정립되는 경로, 부동산법이 유래된 경로, 허가 절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등등에 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역사의 추적은 엄청난 작업이다. 물론 우리는 선조들이 재산권을 규제하거나 제약했을 때, 정말 옳은 일을 했는가를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사유재산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또한 누가 재산권의 변화를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무한히 많은 사유재산제도 중 우리가 선택할 때 당면하게 되는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기꺼이 할 때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는가?”, “나의 주택을 개조하여 공장을 만든다면 나의 이웃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겠는가?”, “그런 불행은 나의 주택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간단한 물음도 사유재산권의 규제 혹은 제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준다. 예컨대 책을 읽을 수 있는 면허를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거의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규제 혹은 제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는 권리의 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 손해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행사가 다른 사람에 미치는 해악이 미미하다면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은 불필요하지만, 권리의 행사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권리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이런 문제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선 Feinberg, J., 1973, pp.41-90을 참조하시오)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의 행사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먼저 고려하여,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거의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손실을 유발한다면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사유재산제도의 변천

사유재산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왔으며, 현재의 제도도 앞으로 계속 변모할 것이다. 중세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다.

5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토지 재산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었다. 왕이 모든 토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의 신탁자로서 왕은 그것을 봉토로 영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토지를 봉토로 받음으로써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또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14세기와 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 이후 왕이 모든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라는 재산제도에 반하는 몇몇 현상이 나타난다. 매우 부유하면서도 그 부가 토지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일단의 집단, 즉 상인, 장인, 은행가, 제조업자들이 등장하였다.

그들의 부, 즉 주로 금과 은 등의 귀금속으로 구성된 부는 그들의 노력이나 기업활동의 결과였으며, 왕이나 교황 등이 주요한 소유자이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소위 사유재산의 정당성은 그 획득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노력의 대가를 축적하여 형성된 재산권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로크(Locke, J.)는 재산권을 자연권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했다.(MacPherson, C. B., 1990, pp.227-56을 참조하시오)

19세기말 미국의 이민 1세대 혹은 2세대는 순수한 사유재산제도를 열렬히 옹호했으

며, 나아가서는 자연권의 하나로서 신성 불가침의 재산권을 거침없이 휘둘렀다. 소위 사유재산제도가 제공하는 기회를 제약하는 모든 조치들을 증오했다. 제약 없는 재산권의 남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20세기 이후에는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의 규제가 뒤따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특히 독점, 공해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4) 재산권이론에 관련된 유의사항

재산권이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로 실제 세계에는 순수한 형태의 재산권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순수한 형태의 제도는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제도는 역사를 갖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리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 등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사건들의 결과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우 유사한 재산권제도를 찾기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주의적 재산권제도와 사유재산제도는 상호간에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차이를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개인이 주요한 소유자인 사유재산제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집단이 규제와 제약을 찬성하는 제도로 변질한다. 반면에 집단이 주요한 소유자인 사회주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이 주요한 소유자가 되는 제도로 변모해 간다.

그러면 이런 제도들은 수렴해 가는가? 그렇지도 않다.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는데, 특정한 국가의 재산제도는 그 국가 내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들간의 갈등과 협력 등에 의해 역사적으로 서서히 수정되어 간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더욱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IV. 공산주의 재산권이론

공산주의 재산권이론은 기본적으로 무소유적 재산권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급하며, 불필요하다면 정부가 그 재산을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하의 내용은 Dyke, C.(1981), pp.84-89를 많이 참조하였음)

1) 사회주의 재산권이론

공산주의 재산권이론을 보기에 앞서서 사회주의 재산권이론을 검토해 보자. 사회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재산권이론을 검토해 보겠다. 자본주의적 재산권이론의 기본은 개인이 그 재산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 개인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적 재산권이론의 기본은 집단이 특정 재산을 소유하며, 그 사용에 대해선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개인의 선을 위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집단의 선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때 집단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가족일 때에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규모가 큰 사회 혹은 국가의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서 혹은 독재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집단이 모든 사물의 기본적인 소유자이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한 사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집단(국가)이 그 개인에게 그 사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양여하였다는 것을 그 개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유재산제도의 경우에 완전히 반대된다. 즉 사유재산제도에서는 개인이 기본적인 소유자이며, 그리고 규제 혹은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집단(국가)의 의무가 된다.

국가로서의 집단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의사결정은 독재적인 형태(그 결과 전체국가)의 의사결정이 되거나 혹은 평화로운 여론수렴의 형태를 취하게도 된다. 소위 국가 지도자 1인 혹은 소수집단이 의사결정의 주체이면 그 국가는 독재의 형태를 띠 것이며, 여론 수렴이나 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원칙을 수용한다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집단이 그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존중이 매우 강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들은 전체정치 하에서 핍박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 중간 형태에 있을 수도 있다.

2) 나의 것과 당신 것

마르크스는 “나의 것”과 “당신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산권에 관한 공산주의이론을 전개한다. “나의 것”과 “당신 것”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재산의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나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등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재산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개념을 좀더 살펴보자. “나의” 친구와 “당신의” 친구는 동일한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공동 소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가? 통상은 그렇지 않다. “나의” 친구, “나의” 부모, “우리의” 아이들은 분명히 재산권의 개념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재화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를 생각해 보자. “풍속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원래의 소유주는 김홍도였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현재 호암미술관에 있다고 가정하자. 김홍도의 풍속도는 누구의 소유인가? 김홍도의 것인가?

만약 풍속도를 예술작품으로서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호암미술관의 소유이다. 즉 호암미술관은 풍속도를 다른 소장자로부터 구입했으며, 또한 그것을 재산으로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풍속도를 예술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즉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의 것”(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김홍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의 것”,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풍속도가 나에게 가치가 있고 당신에게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김홍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김홍도의 창조적인 삶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이고 동시에 당신의 친구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

3) 공산주의 재산권이론

마르크스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김홍도의 풍속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길 기대하고 있다. 즉 모든 사물이 우리에게 갖는 가치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 사물들을 재산으로 전혀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경제체제를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이 체제는 사회주의와 대비된다. 사회주의에서는 집단이 주요한 소유자인데,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소유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재산권의 폐지를 언급했을 때 그는 종국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자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중간기착지일 뿐이다.

예술품에 대해선 “나의 것”과 “당신의 것”과 같은 무소유의 개념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사물에 대해 “나의 것”과 “당신 것”이 공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그 예술품을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옷, 음식물 등과 같은 사물들에 대해선 그 적용이 매우 어렵다. 고타강령 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에 나오는 마르크스(Marx, K., 1875)의 주장,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ies: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후자(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게 평가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과 관련을 맺으며, 그리고 그들의 욕구 충족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 물건들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물건이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때 그것은 모두에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그때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세상은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전해야 한다.(Burkitt, B., 1984, pp.37-38을 참조하시오) 그럴 경우에만 국가는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제공할 수 있고, 개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에 반납하면 그만일 것이다.

이런 세계는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면 가능한 세계일 것이다. 즉 인간이 자연과 사회 모두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면, 가능한 세계이며, 지금은 꿈속에서나 그리는 환상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문명이 그 정도까지 충분히 발전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V. 재산권제도와 이데올로기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며, 한때는 사유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재산권의 획득과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개개인이 소유하는 재산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Nozick, R., 1974, pp.150-153을 참조하시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 전체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오래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모든 시민들의 기본 욕구)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국가의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사유재산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계의 생물학적인 욕구에 충실하도록 만들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Terchek, R. J. and Moore, D. K., 2000, p.908)고 하였다.

사유재산제도는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도록 만들고 국가나 통치자가 개개인의 욕구를 알 필요도 없고 또한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런 체제이다. 누군가가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개개인의 욕구를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제도가 인간에 의해 창조됨으로써 개개인은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개개인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된 결과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되었다.

특히 사유재산권제도는 개인적 자유의 허용 없이는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은 개개인의 욕구 충족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과 처분을 허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적 자유의 신장을 가능케 하였으며,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탄생시키게 만들었다.

반면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재산권이론은 부의 개인적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의 창조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과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는 부를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노동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그리고 생산물은 노동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재는 과거노동의 축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본재의 소유는 노동자 혹은 기업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이어야 하거나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어선 안 된다(즉 무소유)고 보았다. 특히 토지는 어느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부당하며, 따라서 토지는 자본재처럼 공유이거나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어선 안 된다.(재산권에 대한 자격이 정당하냐에 관한 논의는 Ciocchetti, C., 2002를 참조하시오)

더욱이 자본재나 토지의 사유화는 그 소유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미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노동시장에서 소위 부등가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등가교환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여보다는 적은 보수를 받을 때

발생하며, 기여와 보수의 차이를 자본가착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시장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의 부도덕성을 자본가착취에서 찾고 있다.(부등가교환과 착취에 관해선 Burkitt, B., 1984, pp.19-24를 참조하시오) 따라서 이런 자본가착취를 제거하기 위해선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특히 토지와 자본재 같은 생산수단은 국가 혹은 사회가 공유하거나 혹은 무소유이어야 한다.

VI. 결 론

본 논문은 재산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단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재산권이론의 골격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재산권이론이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욕구 충족이 경제활동의 핵심인데, 개개인의 욕구가 무엇이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그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핵심적인 사항들이다.

자본주의 재산권이론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사유재산제도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시장에서의 거래가 자유롭다면 모든 사람들은 시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어떤 다른 방법보다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다소 무리한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효율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약자들의 빈곤에 대한 무대책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재산권이론은 소득분배의 불공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산의 사유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토지와 같은 자연의 선물은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자본재의 경우도 노동자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본가가 소유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토지나 자본재의 사유화는 약자들, 특히 노동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사유화보다는 공유화 혹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근본적으로 인

간의 욕구는 노동자이든 자본가이든 혹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한 이후에 등장한다고 한다면 실현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박세일(2000), 『법경제학』, 박영사.

Alchian, A.(1977), "Some Implications of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 Transactions Costs", in *Economics and Social Institutions: Insights from the Conferences on Analysis and Ideology*(ed. by Brunner, K.), Martinus Nijhoff Publishing, pp.234-55. Reprinted in *The Economic Foundations of Property Rights*, (ed. by Pejovich, S.), Edward Elgar, pp.7-28.

Burkitt, B.(1984), *Radical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the Alternative Economics*, Wheatsheaf Books Ltd.

Ciocchetti, C.(2002), "The Attraction of Historical Entitlements," *Journal of Value Inquiry*, vol.36, pp.59-71.

Dyke, C.(1981), *Philosophy of Economics*, Prentice-Hall.

Feinberg, J.(1973), *Social Philosophy* (문창욱 역: 『사회철학』, 종로서적, 1992), Prentice-Hall.

Hausman, D. M. and McPherson, M. S.(1993), "Taking Ethics Seriously: Economics and Contemporary Moral Philosoph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I(2), pp.671-731.

(1996), *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yek, F. A.(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김균 역: 『자유헌정론 I, II』, 자유기업센터, 1997), Routledge & Kegan Paul.

Lutz, M. A.(1999), *Economics for the Common Good : Two Centuries of Social Economic Thought in the Humanistic Tradition*, Routledge.

MacPherson, C. B.(1987),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in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and Other Essays*(ed. by MacPherson, C. B.), Oxford

- University Press, pp.1-20. Reprinted in *Economic Justice*(eds. by Brosio, G. and Hochman, H. M.), vol. I, 1998, pp.3-22.
- (1990),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황경식, 강유원 공역: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 이론』, 박영사).
- Marx, K.(1875),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lackwell.
- Pejovich, S.(1997), "Introduction to Chapters 2, 3, 4 and 5", in *The Economic Foundations of Property Rights*, (ed. by Pejovich, S.), Edward Elgar, pp.3-6.
- Posner, R. A.(1992), Extracts from "Property" in *Economic Analysis of Law*(Posner, R. A.), 4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pp.32-49. Reprinted in *The Economic Foundations of Property Rights*(ed. by Pejovich, S.), Edward Elgar, pp.29-46.
- Shand, A. H.(1984), *The Capitalist Alternative: an Introduction to Neo-Austrian Economics*, Wheatsheaf Books.
- _____ (1990), *Free Market Morality*(이상호 역: 『자유시장의 도덕성』, 문예출판사, 1996), Routledge.
- Smith, T. W.(1999), "Aristotle on the Conditions for and Limits of the Common Go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3, no.3, pp.625-36.
- Terchek, R. J. and Moore, D. K.(2000), "Recovering the Political Aristotle: a Critical Response to Sm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4, no.4, pp.905-11.